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청약통장
	국가유공가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필요
	장애인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